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4 | 2024.02.26 (2024.02.19~02.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9~02.25)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 주에는 제13차(2/20, 울산) 및 제14차(2/22, 창원) 민생토론회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토지구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구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산업수도 울산이 한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 바, ①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원천적 차단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 재검토)**, ② **토지이용규제 혁신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정주환경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14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간 원전 생태계와 원전정책의 정상화 이후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통해 ‘원전 최강국 대한민국’, ‘글로벌 SMR 클러스터 창원·경남’으로의 도약을 다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원전 일감) 22년 2.4조원, ’23년 3조원 공급되었던 원전일감을 올해엔 3.3조원으로 확대, ② (금융 지원)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3년 5천억원에서 ’24년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 ③ (투자 확대)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 ④ (R&D 혁신)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앞으로 5년간 4조원을 투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핵심가치)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등을 토대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 강화**, ③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 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채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리고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총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와 **100분의 50을 공제해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이번 주에는 **2/29(목) 제413회 국회(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여 “**선거구 확정**” 등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위에서는 대법관후보자(신숙희) 인사청문회(2/27), 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인사청문회(2/28)가 각각 열릴 예정이며, 2/29(목) 본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정무위는 **2/29(목) 11시 경제·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3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정부부처 합동) ... 7
- 제14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정부부처 합동) ... 12
-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환경부) ... 13
-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 17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 18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환경부, 국토교통부) ... 1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9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2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2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21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 2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방부) ... 2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3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5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5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6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27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2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2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 2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29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3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3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32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3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34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3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3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3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9~02.25) [바로가기](#)

- [통상관세]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미국 업계의 보조금 조사 신청 동향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농림부, 국토부)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24-02-20
---------------------------------	---	------------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함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 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함

*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km²)가 GB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함

** 울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애로

주요 내용으로는

(1)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①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 (현황)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20년 단위 수립(5년단위 변경가능), 해제가능 총량은 중앙에서 '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 (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 허용

② 원천적 차단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 (현황)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

* GB 內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 <6개 지표> ①표고,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

** 1·2등급 비율: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 (개선)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대체지(신규GB) 지정 조건

③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 재검토

- (현황)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를 해제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운영되어, 지역에서는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6개 환경지표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최종 그린벨트 등급 설정('99년 도입)

- (개선) GB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2) 토지이용규제 혁신

①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 (현황)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나 규제 지역은 지속 증가하여 현재 336개*
- * 현존하는 지역·지구 수 : ('18) 312개 -> ('20) 329개 -> ('23) 336개
- (개선) 기존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 금지

-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지역은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
- ▷ 중첩된 규제지역·지구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해제 절차 도입
- ▷ 토지이용규제법에 미등록된 규제지역은 신규 지정 원칙적 불허
- ▷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할 경우는 적정성 검토 의무화

②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 (현황) 계획관리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40%로 낮게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는 등 효율적 활용에 한계
- (개선)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기반 시설 확보시 공장 건폐율 완화(현행40%→개선70%)

* '23.말 기준 전국 공장 21만개 중 비도시지역에 7.3만개 공장 입지

◦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 (현황)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어 증·개축이 금지

* 최근 5년간('18~'22) 공장 설치를 위한 보전산지 전용허가 평균 면적은 177만㎡

- (개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 (현황) 공장 준공 이후의 예상치 못한 용도지역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향후 기존 공장의 증축에 애로 발생
- (개선)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

* 例 :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30%로 준공된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변경되어도 건폐율 40%를 적용한 증축 가능

③ 정주환경 개선

◦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

- (현황) 생산관리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점 입지가 제한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곤란

* 주로 농림업 등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하는 지역으로 이용

- (개선)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현행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

◦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허용

- (현황) 녹지, 관리지역에 초·중·고교 입지가 가능하나, 동일한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입지가 불가하여 교육 기회 제한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허가받은 학교로 현재 51개 운영 중

- (개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입지 허용

◦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구제 완화

- (현황) 20여년 간 경관 저해를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이격토록 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곤란
- (개선) 지자체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 삭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이전 정부

“수동적·경직적
제도운영으로
지역투자 유치 한계”

정책방향

중앙정부 중심
획일적 규제

해제총량

엄격한 해제총량 적용으로
지역사업 추진 제한
→ 지역의 개발 가능
사업 제한

환경등급

환경 1~2등급지는
GB해제 불허
→ 개발가능지 확보 한계
및 부지정형화 곤란

예시 : A산업단지 (이전)



윤석열 정부

“① 지역, ② 환경, ③ 기업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지원”

정책방향

지방 권한의 확대,
유연한 대응

해제총량

국가전략 +
지역전략사업 (비수도권)
해제총량 예외 인정
→ 지역의 개발 가능사업 확대

환경등급

환경 1~2등급지 해제 허용
(대체지 지정 조건)
→ 그간 개발이 불가능했던
구역도 개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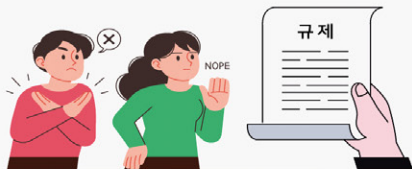
예시 : A산업단지 (개선)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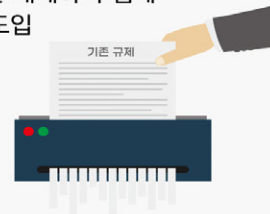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 금지

-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해야
규제 신설 허용
-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 추가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기존의 낡은 규제는 철폐

- 현재의 336개 토지이용규제를
재검토하여 낡은 규제 혁파
- 중첩규제는 해제하기 쉽게
일괄심의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01 수직농장

추진 배경

농업에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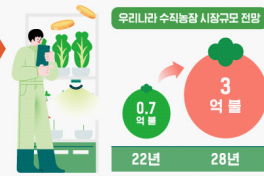
수직농장 농지 위 설치 허용



- 가설건축물 형태 일시사용기간 연장
-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일정지역 내 농지 설치 허용

기대 효과

수직농장 국내 시장규모 확대 및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 기대



02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추진 배경

도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여있어 토지활용에 제약



주요 내용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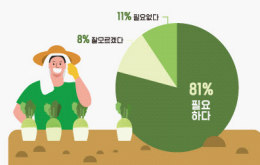
자투리 농지를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에 활용



03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 배경

5도2촌 등 동농 복합생활 수요 증가



일반국민 · 농업인 2.6천명 대상
수요 설문조사

주요 내용

농지에 주말체험농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허용



기대 효과

체류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



정부부처합동
(산업통상자원부)**제14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2024-02-22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1) 원전정책 정상화 추진 경과**①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 선언**

-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시키며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및 월성 2·3·4)의 가동연장, 즉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

②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하였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짐

-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23.3)과 보조기기 발주('23.5) 등을 통해 '22년 2.4조원에서 '23년 3조원으로 지속 확대

③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 착수('23.3),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3.7)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 수주 성공**(2) 원전 생태계 온기 회복 성과****① 정부는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들어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

-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되어 달성

<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추이 >

구분	기업 매출	고용	투자(한수원 제외)	전공 입학생	원전설비 수출
'17	23.8조원	3.7만명	2.4천억	874명	('17~'21) 0.59조원
'21	21.6조원	3.5만명	1.4천억	681명	('17~'21) 0.59조원
'21	21.6조원	3.5만명	1.4천억	681명	('17~'21) 0.59조원
'22	25.4조원	3.6만명	2.5천억	751명	('22~'23) 4.01조원

* 출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원자력산업협회) / 원전수출실태조사 (원전수출산업협회)

(3) 주요 정책 방향 및 기대효과**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 원전일감 3.3조,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이상 '24년),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기술 R&D (5년간 4조원) 등

② SMR 선도국 도약

-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제와 전략을 금년 중 마련, SMR 위탁 생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추진 등

③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2024-02-20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

②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

동 지침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 전액지원 기준 충족 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 노력 유도**
- **긴 1회충전 주행거리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충전불편 해소**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내재화**
- **긴 보증기간,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지원으로 택시, 택배 등 **영업용 전기차 보급 가속화**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http://www.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4-02-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함

* (비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핵심가치, 식의약안전 SOP):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 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평균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어 보관 물류·비용 절감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

* NIMS(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여 제조·수입·유통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

- ③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

–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그리고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업무추진 체계 >

핵심전략 1 안전에 신뢰를 더 하는 과학(Science)

- ①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 ②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 ③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핵심전략 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On-site)

- ④ 더 가까이 듣고 더 쉽게 알려 공감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⑤ 수요자 맞춤 정책 확대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⑥ 혁신과 서비스로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전략 3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On-site)

- ⑦ 협력의 중심이 되어 끊임없는 마약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 ⑧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 ⑨ 함께 지키는 더 단단한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 2024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전이 기본입니다」

식약 안전이 일상이 되는 세상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science

○ 디지털 혁신 안전관리 ○



모든 수입식품 전자심사

- 365일 24시간 자동 신고수리

온라인 불법광고 AI 자동분석

- 단어, 이미지 유사성 분석(자연어 처리 -> 필로폰)

○ 위해 예측 선제적 대응 ○



잔류동물용의약품 PLS시행

- 축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강화

실시간 이슈감지·알림플랫폼 구축

- 위해정보 협력국가도 확대 (14-> 47개국)

○ 과학 기반 규제 생태계 조성 ○



식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디지털의료제품 맞춤형 규제체계 정립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on-site

○ 더 쉽게 공감·신뢰 제고 ○



푸드QR정보시스템 구축

- 중요 안전정보는 크게, 모든 정보는 QR에

허가정보 점자, 음성·수어영상 제공

- 안전상비약품 등 39품목, 생리용품 등 의약품 15품목

○ 수요자 맞춤 정책 확대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 확대

의료기기 부작용 보상책임공제 본격운영

○ 산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 ○



규제혁신 3.0 로드맵 수립

- 과학기반 제품화 지원과제, 민생현장 요구과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육성 기반 마련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partnership

○ 협력하여 마약 안전망 완성 ○



오남용 AI 분석·신속조치

- 관계부처 정보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소 설치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 글로벌 규제 선도, 외교 ○



APFRAS 사무국 운영 회원국 확대

해외 규제당국자 협력(R2R) 확대

- 한-싱 의약품 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
-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등

○ 함께 하는 안전 거버넌스 ○



해외 온라인물 불법 식의약품 자율차단 협력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 확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농림축산식품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24-02-21 시행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항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

이에 맞추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및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 등으로 정하고, 산림청장 등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산림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하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 및 총사업비·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2024-08-21 시행예정
---------	--------------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수행 업무에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 제11조제8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0조 등)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21 시행예정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카목, 제7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의8 신설, 제14조의7 등)

산업통상자원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2024-08-21 시행예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제128조제8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2025-02-21 시행예정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4조제7호 신설, 제13조제3항, 제23조제4호 신설,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2024-08-21 시행예정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5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함 (제6조 및 제8조)
- ③ 이행의무자가 작성한 배출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④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제9조 및 제10조)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예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호 삭제, 제31조제3항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2025-08-21 시행예정

(다만, 제26조의3제4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를 폐지하고,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2조의 3제4항, 제26조의3제4항제3호 신설, 제28조제1항, 제37조제2항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9. ~02.20.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 (안 제3조의2)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tel:044-215-4331)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9. ~02.20.
-------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 (안 제2조의2)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tel:044-215-4331)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 · 장기 · 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

이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 · 내용 · 방법 등을 구체화 (안 제6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 ②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 (안 제61조의4 신설)
- ③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 · 증도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 (안 제61조의6 등 신설)
-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신설 (안 제61조의10 신설)
- ⑤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 (안 제61조의8 신설)
- ⑥ 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 ·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 (안 제2조의3 등 신설)

※ 문의처 : [국방부 전략정책과](mailto:국방부_전략정책과) (전화: 02-748- 5613,, 팩스: 02-748-6895)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4.01.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

이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 (안 제4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 (안 제58조제1항 별표3)
-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착수금·중도금 지급비율 설정 (안 제37조의2 신설)
- ④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 (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 문의처 : [국방부 전략정책과](mailto:국방부_전략정책과) (전화: 02-748-5613, 팩스: 02-748-6895)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 (안 제2조)
 -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추가함

②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관련 당초처분 유지 사유 등 마련 (안 제64조)

-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제6항)
-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제7항)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신설 (안 제83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로 규정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5-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 (안 별지 제65호서식)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②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 (안 제49조 등)

-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서식 신설 (안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5-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채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 (안 제46조 및 제47조)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②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 (안 제85조의2)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5-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5조, 제22조)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③ 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 (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④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 (별지 제88호 서식)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5-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증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총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 (안 제18조제6항 신설)
- ②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안 제28조의4)
- ③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 (안 제38조의2 신설)
- ④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 (안 제38조의3, 제81조의2 등)
- 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 (안 제69조의2 신설)
- ⑥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안 제70조의2)
- ⑦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 (안 제72조)
- ⑧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 (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 ⑨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 (안 제134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5-8969)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0.
~03.11.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 (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 ②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 (안 제29조 등)
- ③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 (안 제30조 등)
- ④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 (안 제72조)
- ⑤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9호의 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 ⑥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 ⑦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2호서식)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mailto:행정안전부_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5-8969)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19.
~04.01.

약사법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취소 사유 마련 (안 제11조의3, 5, 6)
 -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개설자로 정함

- 공공심야약국 신청서식 및 지정서식을 구체화하고(별지 제7호의3, 4), 준수사항(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서면 교부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효력 등 규정
-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해당 약국 운영이 공공심야약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개설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도록 정함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설정 (안 제11조의4)

-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및 휴무일 규정

③ 등록기준지 삭제 (별지 서식 제5호, 제7호의2, 제9호)

- 서식 내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tel:044-202-249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9.
~04.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 (안 제1조의2)

-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tel:044-201-4156)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22.
~02.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 (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tel:02-2110-1533) (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23.
~04.0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검사·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4. 1. 2.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 (안 제61조, 안 별표 19)
- ②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 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별표 23)
- ③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 (안 별표 23)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tel:043-719-2016) (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2024-02-16 발의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2-19 발의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02-20 발의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과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은 독거노인, 미혼청년 등이 늘어나면서 1인가구는 천만 가구 시대를 시작하게 됨.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힘.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5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2024-02-21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98조의9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2024-02-16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2-19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혜택의 부재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02-20 발의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의원 등 11인)

2024-02-21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9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2024-02-22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종과세 대상에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9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2024-02-20 발의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전국적으로 1만 호(2023년 11월 기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02-23 발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2024-02-16 발의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02-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45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2024-02-20 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 ②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 (안 제4조)
- ③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7)
- ④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10)
- ⑤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 ⑥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 (안 제40조의17)
- ⑦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6년으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 ⑧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8조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등 10인)

2024-02-22 발의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일시	내용
2/29(목) 14:00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2/27(화) 10:00	대법관(신숙희)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28(수) 10:00	대법관(엄상필)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29(목) 11:00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무위	전체회의	2/29(목) 11:00	경제·민생 법안 상정 및 논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26(월) 14:00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양정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8(수) 10:00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신현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2/28(수) 14:00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강원연구원, 유상범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8(수) 14:00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9(목) 10:00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2/29(목) 13:00	제6회 한국희귀질환 포럼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2/26(월)	「THE 현안」 제2호 발간 - 독일의 무제한 교통티켓, 그 후...	국회도서관	
	2/26(월)	「현안, 외국에선?」 제76호(2024-4호) 발간 - 대만 민진당 재집권과 동아시아 정세 변동		
	2/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9호(2024-1호) 발간 -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2/28(수)	「금주의 서평」 제667호(2024-8호) 발간 - 도서명 :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 - 저자 : 마크 코켈버그		
	2/28(수)	「국회예산정책처 20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2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8호 발간 -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9(월) 14:00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19(월) 15:00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0(화) 10:00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0(화) 14:00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양정숙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0(화) 19:00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김근태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2(목) 10:00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신현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2(목) 14:00	국지화되는 자연재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민형배 ·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2/22(목) 14:00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달곤 · 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2/20(화) 15:00	2024년도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AI와 공교육	국회도서관	국가전략 정보센터
	2/21(수)	「World&Law」 제2024-4호 발간 - 아빠도 출산휴가 맘 놓고 쓰려면?		
		「금주의 서평」 제666호(2024-7호) 발간 - 도서명 : 인구 위기 저자 : 알바 뮌르달, 군나르 뮌르달		
	2/22(목)	「현안, 외국에선?」 제76호(2024-4호) 발간 - 대만 민진당 재집권과 동아시아 정세 변동		
	2/23(금)	「NABO 경제 동향」 2024년 2월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19(월)	「이슈와논점」 제2195호 발간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국회입법조사처	
	2/20(화)	「이슈와논점」 제2196호 발간 -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2/21(수)	「이슈와논점」 제2197호 발간 - 미국 대선 후보자 선출 과정과 2024년 대선		
	2/22(목)	「이슈와논점」 제2198호 발간 -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은?		
	2/22(목)	「이슈와논점」 제2199호 발간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2/23(금)	「이슈와논점」 제2200호 발간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9 ~02.2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22(목)	통상관세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미국 업계의 보조금 조사 신청 동향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